

I 우리기업 직접 신청 사례

NY N342865	[에틸 락테이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1.06
NY N344861	[스프레이 용기] 원산지 판정,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2025.01.14
NY N345329	[OLED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2.19
NY N347172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4.25
NY N348231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5.02
NY N347634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5.07
NY N347808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5.07
NY N348029	[파워 어댑터 세트] 원산지 판정	2025.05.14
NY N348185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2025.05.15
NY N348403	[화장용 브러쉬(1)] 원산지 판정	2025.05.22
NY N348412	[화장용 브러쉬(2)] 원산지 판정	2025.05.22
NY N348301	[골프공]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5.28
NY N349313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원산지 판정	2025.06.06
NY N349668	[버터플라이 밸브]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6.17
NY N350063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2025.06.27
NY N350112	[레코드판]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7.03
NY N350711	[집적회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7.10
NY N350178	[인스턴트 라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2025.07.14
NY N350773	[히트 펌프] 원산지 표시	2025.07.21
NY N350620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7.24
NY N350768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2025.07.28
NY N351234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원산지 판정	2025.07.31
NY N350938	[정맥 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2025.08.01
NY N352190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2025.08.22
NY N352536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2025.09.09
NY N352591	[피하주사제] 원산지 판정	2025.09.18
NY N352821	[마이크로컨트롤러 집적회로 칩] 원산지 표시	2025.09.22
NY N353664	[저전압 케이블]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2025.09.30

NY N352538	[드론 세트] 원산지 판정	2025.10.03
NY N351688	[실리콘 음극 활물질]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2025.10.16
NY N354492	[와이어링 하네스]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2025.10.17
NY N354494	[자동차 도어 엣지 가드] 원산지 판정	2025.10.31
NY N355536	[클렌저] 원산지 표시	2025.11.24
NY N355178	[즉석라면] 원산지 표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2025.11.24
NY N356155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 판정	2025.11.26
NY N356156	[아이들러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2025.12.08
NY N355798	[DIY 니트 신발 키트]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2025.12.17
NY N356520	[공기 필터] 원산지 판정	2025.12.18
NY N356930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 판정	2026.01.05
NY N357198	[리코일 스프링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2026.01.13
NY N357241	[정맥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2026.01.21
NY N357240	[정맥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2026.01.21
NY N357655	[광섬유 케이블]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2026.01.23
NY N358313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무역제재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2026.02.11
NY N358367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2026.02.20
NY N358366	[리튬 인산철 양극 활물질]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2026.02.23
NY N358415	[리튬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용액]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2026.02.25
NY N358854	[DIY 코바늘 신발 키트]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2026.02.27

에틸 락테이트

사 례 명 [에틸 락테이트]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2865 (2025.01.06.)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Ethyl Lactate(에틸 락테이트)
	구 성	•원재료 : 젖산(Lactic Acid, 중국산 원료) •부재료 : 에탄올(Ethanol, 반응물로 사용) •완제품 : 에틸 락테이트(화학식 C ₅ H ₁₀ O ₃ , 젖산과 에탄올의 에스터화 반응으로 생성)
	용 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희석제, 고순도 세정제 및 용해제로 활용
	원 재 료 H T S U S	
	완 제 품 H T S U 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젖산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화학적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젖산을 에틸 락테이트로 변환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본 사례에서는 ① 원재료인 젖산의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 ② 한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이 화학적 에스터화 반응(esterification)이라는 점, ③ 이러한 가공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인 에틸 락테이트가 창출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고려 요소로 검토됨

- (판정 결과)

- 중국산 젖산은 한국에서의 화학적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에틸 락테이트로 변형되었으며, CBP는 한국에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결 론

- 중국산 젖산은 한국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여 에틸 락테이트로 제조됨으로 최종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



스프레이 용기

사례명 [스프레이 용기(에어리스 펌프 용기)] 원산지 판정,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사례번호 NY N344861 (2025.01.14.)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에어리스 펌프 용기(스프레이 용기)
	구성	• 튜브형 슬리브(중국산) • 버튼, 스냅온 캡, 오버캡, 펌프(한국산)
	용도	화장품 충전용 에어리스 펌프 용기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8424.89.9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산 resin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슬리브 본체 압출, 코팅 및 도장 3. 튜브형 슬리브 한국으로 수출 4. 한국에서 튜브형 슬리브에 버튼, 펌프, 캡 등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완성 5. 미국으로 수출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용기에 필수 구성요소인 펌프와 버튼이 결합됨으로써 스프레이 용기로 변형되었으므로, 개별 부품들이 상업적으로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진공펌프 용기의 조립 공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개별 품목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함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8424.8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4/54』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30.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판정 결과)
 -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 튜브형 슬리브의 HS Code(제39류)가 완제품의 HS Code (제8424.89호)와 상이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적용이 가능함

결론

-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OLED 모듈

사 례 명 [OLED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5329(2025.02.19.)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OLED 모듈(모델명 : AMUA11DV01, AMB686EP01)
	구 성	OLED 셀, 편광판(POL),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 회로(DDI), 연성 인쇄회로 조립체(FPCA),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로 구성
	용 도	태블릿,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화면 모듈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 조 공정	[상세 공정] 1. OLED 셀 제조(한국) - 박막 트랜지스터(TFT) 공정 : 유리 기판 위에 패턴링 및 증착을 반복하여 TFT를 형성하여 TFT 글라스 제조 - 증착(EV) 공정 : TFT 글라스 위에 유기 발광층과 음극을 증착하여 EV 글라스 제조 - 봉지(EN) 공정 : EV 글라스를 다른 유리나 접합하거나 얇은 필름으로 덮어 산소와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EN 글라스 제조 - 셀 절단 공정 : 셀 절단 후 테스트 2. 조립(ASSY)(베트남) - OLED 셀에 POL, DDI, FPCA,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를 부착하여 OLED 모듈 완성 * 연성 인쇄회로 조립체(FPCA)는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음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OLED 모듈의 핵심 구성요소인 한국산 OLED 패널은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가공에 의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음
- 해당 OLED 패널은 한국에서 수출될 당시 이미 최종 용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공 이후에도 그 상업적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함

- (판정 결과)

- OLED 모듈의 핵심 구성요소인 한국산 OLED 패널은 베트남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OLED 모듈의 원산지는 패널이 제조된 한국으로 판단됨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 론

- 베트남에서의 조립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완성된 OLED 모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되며,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

사례명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ESS LFP pouch cell)]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7172(2025.04.25.)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리튬 인산철 파우치형 전지(ESS LFP pouch cell)
	구성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파우치, 각종 바인더와 터미널 탭 등
	용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 충전식 전지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8507.6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파우치셀 제조공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세부작업이 있음1. 1단계 : 전극 제조 공정<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재료 믹싱 및 슬러리화 : 양극/음극 활물질, 도전재, 용매, 바인더 등을 혼합해 슬러리를 만들도포 및 롤형성 : 슬러리를 금속 포일(양극/음극)에 도포해 반제품 롤(Forming semi-finished roll) 제작슬리팅 : 물을 필요한 두께로 압연(Roll Press) 후, 폭 단위로 절단(Slitting)2. 2단계 : 전극, 분리막, 기타 부품의 조립 및 전해액 주입 단계<ul style="list-style-type: none">노칭과 진공건조 : 전극 재단(Notching) 후, 고온 진공 환경에서 수분 제거스태킹 : 양극/음극 시트와 분리막을 교대로 적층해 젤리롤(jelly roll) 구조 형성탭 용접/파우치 삽입/전해질 주입 : 탭을 납땜하고 파우치에 삽입한 뒤 전해질 주입 및 파우치 밀봉3. 3단계 : 포메이션 공정<ul style="list-style-type: none">포메이션(활성화) : 저속으로 충전하여 전해질과 전극 표면에 보호막 형성, 탈기 및 제품 테스트 (용량, 크기, 절연저항 등 검측)원재료 조달방법(2가지)
	시나리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 : 단자 탭, 도체용 원재료, 다양한 바인더 재료, 분리막 롤, 전해액 드럼중국 : 양극 및 음극 활성 물질말레이시아 : 음극 포일 롤일본 : 파우치용 필름 롤프랑스 또는 미국 : 바인더 재료
시나리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 : 양극 및 음극 활성 물질, 다양한 바인더 재료, 용매, 분리막 롤, 음극 포일 롤, 파우치용 필름 롤, 전해액 드럼한국 : 다양한 바인더 재료 및 단자 탭미국 : 바인더 재료	

쟁점 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다양한 형태의 원재료(액체 화학물질, 소재 롤, 원재료 등)는 한국으로 수입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었음. 외국산 원재료는 생산 라인의 각 단계에 투입되어 반제품 형태와 부품으로 가공된 후, 최종적으로 배터리 셀로 제조됨. 이러한 제조 과정의 결과물인 리튬 인산철 파우치 셀은 원재료가 생산 전 보유하고 있던 성격과는 다른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갖고 창출되었음
- 이처럼, 한국에서 수행되는 제조공정은 외국 원재료에 대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켰음
- 따라서, 본건 리튬 인산철 파우치 셀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

결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사례명 [직접식 감지 컨트롤러]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8231 (2025.05.02.)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 Hands-On Detection (HOD) Controller • 부품번호 56188DO000, 56188P6000
	구성	• 원재료 : 다양한 전자 부품 (집적 회로, 저항기, 커패시터, 커넥터 등)이 장착된 인쇄 회로 기판 조립(PCBA) • 부재료 : 플라스틱 케이스
	용도	• 자동차 스티어링 휠 내 부착되는 정전 용량 감지 시스템 •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여 미접촉 시 경고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8543.70.986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프랑스 - PCBA(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제작 - PCBA에 부품 장착 후 리플로우 오븐에서 납땜 및 가열(표면 실장 기술(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 → 검사·포장 후 중국으로 배송 2. 중국 - 중국에서 성형된 플라스틱 상·하부 하우징 내부에 장착 - 검사·포장 후 미국으로 배송	

쟁점 사항

-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프랑스에서 제조된 PCBA가 완제품 장치의 주요 전기적 기능을 나타내므로 완제품 장치의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
 - 중국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단순하며 PCBA를 새롭고 다른 상업 제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프랑스로 판정됨

결론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 조립에 해당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제품은 프랑스산으로 간주됨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사 례 명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사례번호 NY N347634(2025.05.0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 NX4(일명 : 중간 샤프트)
	구 성	• 핀치 볼트 요크(Pinch bolt yoke, 인도산) • 파이프 요크 조인트와 샤프트 요크 조인트(pipe yoke joint·shaft yoke joint, 베트남산) • 볼 슬립 부시 어셈블리 (ball slip bush·spider·dust cap·e-ring, 한국산) • 니들 베어링(needle bearing, 중국산) 등
	용 도	자동차의 조향(스티어링) 장치에 사용되어 회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함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인도, 베트남, 한국, 중국에서 개별 생산된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에서 부품의 스테킹(적층), 피팅(조립) 등을 수행하여 제품을 완성 - 멕시코에서의 전체 공정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단순 조립에 가까움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지 않음. 베트남산 부품인 파이프 요크 조인트와 샤프트 요크 조인트(pipe yoke joint·shaft yoke joint)가 완성된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Universal Joint Assembly)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주된 부품(핵심 구성요소)으로 판단되며, 해당 부품들의 가치는 다른 개별 부품들보다 상당히 높음
- 따라서, 본건 범용 조인트 어셈블리(Universal Joint Assembly)의 원산지는 베트남산으로 판정

결론

- 멕시코에서의 조립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베트남산 파이프 요크 조인트와 샤프트 요크 조인트가 해당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사례명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사례번호 NY N347808(2025.05.07.)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
	구성	•흑연 코크스 •인조흑연 등
	용도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일부로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7610.90.0080
제조과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생산된 니들 코크스를 중국으로 운송 2. 중국에서 흑연화(graphitization) 공정을 거쳐 합성·인조흑연으로 변화 3. 인조흑연은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여 A국에서 공급된 피치(pitch)와 혼합되고, 복잡하고 정밀한 일련의 제조 단계*를 거쳐 원재료를 최종 제품인 인조흑연 음극 활성 물질로 변환 * 정밀한 물리적·화학적 힘의 결합과 잘 조절된 고온 처리 4.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중국산 인조흑연은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 특히 피치코팅 공정을 통해 특성의 변화가 발생
- 피치 코팅 공정을 거치지 않은 인조흑연은 재충전 성능(충전 효율, 안정성 측면)에 한계가 있어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으로 중국산 인조흑연이 전기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결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며, 무역법 제301조에 다른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파워 어댑터 세트

사례명 [파워 어댑터 세트]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48029(2025.05.14.)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Safe Ultra-fast Multi-charger(일명 : 멀티 충전기 세트)
	구성	60W 전원 어댑터, USB-C 출력 케이블 어셈블리
	용도	여러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하는 충전기 세트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60W 전원 어댑터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 2. USB-C 출력 케이블은 한국산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조립 3. 한국에서 출력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함께 소매용 패키지로 포장하여 수출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중국산 전원 어댑터와 한국산 케이블 어셈블리를 함께 소매 포장하는 과정은 중국산 전원 어댑터를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음
- 본건의 경우, 전원 어댑터가 소매 세트 물품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멀티 충전기 세트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결론

-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함께 소매 포장하는 경우, 단순 소매 포장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세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부여된 물품의 원산지로 판정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사례명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48185 (2025.05.15.)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 NX4(모델 7611640A, 7612134A)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델 7611640A<ul style="list-style-type: none">강화유리/적외선 차단 유리(중국산)알루미늄 합금 및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프레임/레일(한국산)고무 실링 부품, 모터(한국산)모델 7612134A<ul style="list-style-type: none">강화유리/적외선 차단 유리(한국산)알루미늄 합금 및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프레임/레일(한국산)고무 실링 부품(한국산)모터(필리핀산)
	용도	승용차·SUV용 차량 지붕 개방·환기·채광 장치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공정	<p>[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모델 7611640A의 제조 공정<ol style="list-style-type: none">중국산 강화 유리를 한국으로 운송한 뒤 한국에서 나머지 한국산 부품들과 함께 조립한국에서의 조립 : 폴리우레탄(PU) 캡슐화(유리를 프레임과 일체화), 부품 삽입, 나사 체결 또는 기타 부착 방식, 오일 및 윤활 처리 등모델 7612134A의 제조 공정<o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산 강화 유리 등 프레임, 실링 부품은 모두 한국산이며, 모터는 필리핀산임한국에서의 조립 : 모델 7611640A의 과정과 유사함 <p>※ 조립공정은 복합적 공정이나 유리의 물성 변화는 없음</p>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선루프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이미 완제품 상태이며,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수출자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PU 캡슐화 과정이 복잡한 공정으로써 부품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미 CBP는 동의하지 않음
- 한국에서 이뤄지는 PU 캡슐화 기술은 유리와 프레임을 일체화하여 접착제나 클립 없이도 차체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유리 자체는 어떠한 변화도 겪지 않으며, 유리의 본질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됨.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유리를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하지 않으며, 유리의 최종 용도는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의 주요 구성품은 유리이며, 나머지 부품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유리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결정됨
- 따라서, 본건 파노라마 선루프 어셈블리의 경우, 모델 7611640A의 원산지는 중국산, 모델 7612134A 한국산으로 판정

결론

- 외국에서 반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한 뒤 추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더라도, 반제품의 물리적 성격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반제품에 해당 물품에 필요한 기능적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반제품의 제조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



화장용 브러시(1)

사례명 [화장용 브러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48403(2025.05.22.)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화장용 브러시
	구성	폴리부탈렌 테레프탈레이트("PBT")로 만든 절단된 브러시 섬유, 금속제 페룰, 도색된 나무 손잡이
	용도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거나, 블렌딩하거나, 윤곽을 잡는 데 사용되는 미용 도구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벌크 형태의 PBT 섬유, 완성된 형태의 페룰과 손잡이를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 2. 인도네시아 제조공정 - PBT 필라멘트를 검사하고, 불량 또는 결함 있는 자재를 선별·제거 - 브러시 모(毛)를 정렬해 방향과 모양을 균질화 작업 - 브러시 모를 정해진 수량으로 나누어 균일한 다발로 조직 - 나뉜 브러시 모를 원하는 브러시 헤드 구조로 성형한 후, 실로 묶어 페룰에 쉽게 넣을 수 있도록 조정 - 성형된 브러시 모를 금속 페룰에 삽입 - 브러시 헤드가 삽입된 금속 페룰을 접착제로 고정 - 테이핑 공정을 통해 브러시 모의 여분을 제거하여 균일하고 정제된 모양으로 성형 - 불필요하거나 과잉 부분의 브러시 모를 제거 - 정렬된 브러시 모를 정밀하게 손으로 다듬어 브러시 헤드의 최종 형태를 완성 - 완성된 브러시 헤드를 접착제를 사용해 손잡이에 부착하여 화장용 브러시 최종 완성 후 품질 검사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브러시 모가 벌크 상태로 수입되어 완성된 브러시 헤드로 제조 되기 위해 추가 가공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의 페인트 브러시 사례와 유사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61279(1999)*

- 중국산 돼지털 원모, 독일산 나무 손잡이, 이탈리아산 금속 페룰, 네덜란드산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페인트용 브러시 사례
- 중국산 돼지털 가공되지 않은 원모(raw bristle) 상태로 네덜란드로 수입됨
- 네덜란드에서 혼합·정렬·절단·페룰 삽입·에폭시 고정 등 복잡한 다단계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
- 수입 시 원모(중국산)는 단순 붓 머리 전용이 아니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네덜란드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돼지털 기타 부품은 실질적으로 변형됨
- 따라서, 페인트 브러시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임

- **(판정 결과)**

- PBT 섬유를 포함한 중국산 부품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정을 통해 화장용 브러시라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결론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임



화장용 브러시(2)

사례명 [화장용 브러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48412, N348411 (2025.05.22.)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화장용 브러시
	구성	폴리부탈렌 테레프탈레이트("PBT")로 만든 절단된 브러시 섬유, 금속제 페룰, 도색된 나무 손잡이
	용도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거나, 블렌딩하거나, 윤곽을 잡는 데 사용되는 미용 도구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제조공정 - PBT 섬유와 금속 페룰로 제작된 브러시 헤드 및 완성된 형태의 손잡이를 인도네시아로 수출 2. 인도네시아 제조공정 - 테이핑 공정을 통해 브러시 모의 여분을 제거하여 균일하고 정제된 모양으로 성형 - 불필요하거나 과잉 부분의 브러시 모를 제거 - 정렬된 브러시 모를 정밀하게 손으로 다듬어 브러시 헤드의 최종 형태를 완성 - 완성된 브러시 헤드를 접착제를 사용해 손잡이에 부착하여 화장용 브러시 최종 완성 후 품질 검사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다양한 원산지를 가진 부품들이 최종 제품으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사용된 부품의 종류, ② 그 부품들이 거치는 제조 과정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 단일 요소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조립(minimal assembly)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61279(1999)*

- 중국산 돼지털 원모, 독일산 나무 손잡이, 이탈리아산 금속 페룰, 네덜란드산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페인트용 브러시 사례
- 중국산 돼지털 가공되지 않은 원모(raw bristle) 상태로 네덜란드로 수입됨
- 네덜란드에서 혼합·정렬·절단·페룰 삽입·에폭시 고정 등 복잡한 다단계 제조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수출
- 수입 시 원모(중국산)는 단순 붓 머리 전용이 아니며,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므로 네덜란드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되는 과정에서 돼지털 기타 부품은 실질적으로 변형됨
- 따라서, 페인트 브러시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임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733199(1990)*

-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브리스틀 헤드와 금속 페룰, 필리핀에서 제조한 손잡이를 조립하여 페인트 브러시 생산
- 브리스틀 헤드의 윗부분을 평평하게 다듬고 느슨한 브리스틀을 제거 후, 필리핀에서 제작한 나무 손잡이를 브리스틀 헤드에 삽입(못질, 스테이플, 또는 크림핑으로 고정)
- 최종 제품 검사 후 폴리백에 삽입하여, 소매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브리스틀은 완제품의 핵심 요소이며,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복잡하지 않음
- 따라서 필리핀에서의 결합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판정 결과)**

- 브러시 헤드가 완성된 브러시의 기본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새로운 물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완성된 브러시의 원산지는 브러시 헤드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중국으로 판정

결론

-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골프공

사 례 명 [골프공]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8301 (2025.05.28.)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골프공
	구 성	• 기본적으로 고무·합성수지 커버로 이루어진 구조 • Core(코어) : 원재료 혼합 → 절단 → 가열 및 압축 → 연마한 상태(아직 완제품 아님) • Cover(커버) : 압출, 사출 성형으로 코어를 감쌌 • Coating/Marking(도포 및 마킹) : 베이스 코팅, 마킹
	용 도	골프 경기용 공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9506.32.0000
제 조 공정	[상세 공정] • CASE 1(한국 최종 생산) 1. 중국 자회사 : 코어(원재료 혼합·절단·가열·압축·연마) 제작 2. 한국 본사 공장으로 코어 수출 3. 한국 공장 : 커버 압출 → 사출 성형(코어 감쌌) → 베이스 코팅 → 마킹(브랜드·번호 인쇄) → 최종 검사 → 포장 4. 완제품 골프공 → 미국 수출 • CASE 2(중국 최종 생산) 1. 베트남 : 코어(원재료 혼합·절단·가열·압축·연마) 제작 2. 중국 공장으로 코어 수출 3. 중국 공장 : 커버 압출 → 사출 성형(코어 감쌌) → 베이스 코팅 → 마킹 → 최종 검사 → 포장 4. 완제품 골프공 → 미국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본 사례에서 골프공 코어(Core)는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제조된 후 아직 경기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반제품 상태임

- 이후 한국 또는 중국에서 커버 압출, 사출 성형, 코팅, 마킹, 검사, 포장 등을 거쳐 실질적 기능을 갖춘 골프공으로 완성됨에 따라 최종 생산지가 원산지로 인정됨

- **(판정 결과)**

- CASE 1 : 중국에서 코어 생산하여 한국에서 최종 성형·가공함으로 원산지는 한국으로 인정됨
- CASE 2 : 베트남에서 코어 생산하여 중국에서 최종 성형·가공함으로 원산지는 중국으로 인정됨

결 론

- 코어는 단순 반제품에 불과하므로, 최종 골프공으로 성형·가공이 이루어진 국가가 실질적 변형 발생지로 인정됨에 따라 CASE 1은 한국산, CASE 2는 중국산으로 판정되며, 중국산 골프공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대상임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사례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49313(2025.06.06.)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모델명 : AFCK20-S00041)
	구성	•인버터 •메인제어보드, IMD 보드. 파워 ADC 보드 등
	용도	전기 자동차 충전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인버터 생산 2. 한국 제조 공정 1) 저항기, 커패시터, 집적회로, 변압기 등을 기판에 표면실장(SMT) 및 스루홀(through-hole) 공정으로 납땜하여 PCBA* 조립 * 총 8개 : 메인 제어보드, IMD 보드, Power ADC 보드, LED 서브 보드, DP 리셋 보드 등 2) enclosure에 한국산 산업용 PC를 설치, HMI(human machine interface), 차단기(circuit breaker), 전기 접속 장치(electrical connection apparatus), 케이블 조립 3) 테스트 및 포장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여러 원산지의 부품을 납땜하여 PCBA를 제작하는 공정은 해당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켜 한국산 PCBA가 생산됨
- 중국에서 생산된 파워 모듈은 충전기의 중요한 부품이지만 한국에서 수행된 전기 변환·제어·분배 기능·조립 작업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주요기능을 구성한다고 판단됨

결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버터플라이 밸브

사 례 명 [버터플라이 밸브]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9668(2025.06.1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버터플라이 밸브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밸브 바디(body) : 중국에서 주조(casting) → 한국에서 내경 가공, 전·후면 가공(러그 형상 형성), 클램프링 장착부 가공·치형(serration), 상면 밀링, 샤프트·베어링·글랜드·브래킷·보텀커버 등 장착부 가공, 러그/클램프 플레이트 탭·드릴 가공• 디스크(disk) : 중국 주조 → 한국에서 외경·보링부(샤프트 삽입부) 가공• 클램프 링(clamp ring) : 중국 주조 → 한국에서 내·외경/홀/전후면 가공• 시트(seat) : 한국 주조 → 외경·연결/장착/접촉부 가공• 베어링, 디스크 핀, 패킹, 글랜드/글랜드 플랜지, 브래킷, 바텀커버, 시트 링, 체결구 등 : 베어링·디스크 핀은 한국산, 기타는 개별 원산지 언급 없음
	용 도	산업 설비의 파이핑 시스템용 유체 차단·제어(디스크 회전으로 유로 개폐)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481.80.9050 + 9903.01.25.(통관 시 동시 신고 필요)
제 조 공정	<p>[상세 공정]</p> <p>(A) 전·중간 가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바디(중국 주조) → 한국 반입<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경 가공·마감- 전·후면 가공 및 러그 형상 형성- 클램프 링 장착부 가공, 치형(serration) 가공- 상면 밀링- 샤프트/베어링/글랜드 플랜지/브래킷/바텀 패킹/바텀 커버 장착부 가공- 러그 및 클램프 플레이트 드릴·탭 가공2. 디스크(중국 주조) → 한국 : 외경·보링(샤프트 삽입부) 가공3. 클램프 링(중국 주조) → 한국 : 내·외경/홀/전·후면 가공4. 시트(한국 주조) : 클램프 링 접촉부 선삭·가공·연마5. 샤프트(한국 주조) : 외경·연결/장착/접촉부 가공 <p>(B) 최종 조립(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6. 바디 상·하부 스템 보어에 한국산 베어링 삽입 → 샤프트 일부 삽입7. 디스크를 바디 중앙에 위치시키고 샤프트 관통 결합 → 패킹 및 바텀 커버 체결8. 상부 샤프트 홀에 베어링 장착 → 패킹 설치9. 브래킷, 글랜드, 글랜드 플랜지 볼팅 고정10. 디스크 핀(한국산)으로 디스크를 샤프트에 고정11. 시트·시트 링 장착 → 클램프 링 설치12. 검사 → 표면처리 → 시험(test) → 도장(painting)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밸브의 조립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CBP는 밸브의 원산지 결정시 밸브 본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음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39513(2024)*

- 밸브 본체는 태국에서 황동봉을 단조, 절단 가공하여 제조되고 이후 중국에서 크롬 도금 처리 후 최종조립 함
- 밸브의 조립공정이 대부분 부품을 끼우고 나사로 조이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밸브본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밸브의 원산지를 결정하며, 밸브 본체의 원산지가 태국이므로 앵글 밸브의 원산지는 태국임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38713(2024)*

- 밸브 본체는 태국에서 황동봉을 단조, 절단 가공하여 제조되고 이후 중국에서 크롬 도금 처리 후 태국에서 최종 조립 함
- 밸브의 조립공정은 대부분 부품을 끼우고 나사로 조이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밸브 본체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밸브의 원산지를 결정하며, 밸브 본체의 원산지가 태국이므로 해당 밸브의 원산지는 태국임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25765(2022)*

- 독일에서 중국산 밸브 본체에 중국·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산 부품 조립 및 독일산 엔드 커넥션 용접하여 완제품 밸브 생산
- 엔드 커넥션을 밸브 본체에 용접하는 과정이 중요하긴 하나, 밸브는 용접 후에도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며 구성 부품들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다른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변경되지 않음
- 독일에서의 조립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밸브의 원산지는 밸브 본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참고 판정 : *CBP Ruling(NY) N322652(2021)*

- 중국산 부품과 말레이시아산 밸브 본체를 조립 등의 공정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밸브 생산
-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밸브의 원산지는 밸브 본체의 원산지인 말레이시아임

- 중국에서 주조된 밸브 바디는 한국에서 내·외경, 러그, 장착부 등 주요 기능 부위를 정밀 가공·마감함으로써 밸브 본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판정 결과)

- 밸브 바디는 중국에서 주조되었으나, 한국에서 수행된 정밀 가공(내경·러그·장착부·탭 가공 등)을 통해 비로소 밸브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획득하였으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이에 따라 본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

결 론

- 중국산 주조품은 한국에서 정밀 가공을 통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됨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사례명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0063(2025.06.27.)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부품번호 : 285102GAV0)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폴드 어셈블리 : 엔진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를 촉매 쪽으로 유도 - 셀 : 내부 촉매와 지지대를 감싸 고정하고 배기가스가 올바른 경로로 흐르도록 유도 - 상·하부 커버 : 주변 부품을 열로부터 보호하고 셀, 내부 촉매, 지지대를 고정 - 지지대(supporter) : 촉매 주위에 위치하여 충격 흡수 및 위치 고정. 동시에 외부로의 열 전달을 차단 - RR 콘 서브 : 후방 머플러와의 연결 지점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여 배기가스 누출을 방지 •미국산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매 :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며,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 전체 재료비의 77.3% 차지
	용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압 배기가스를 저온·저압 상태로 냉각 및 팽창시켜 배기가스를 정화하고 가스 흐름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기능 수행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p>[상세 공정]</p> <p>1. 미국 제조공정 : 촉매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하게 측정된 정제된 점토, 알루미늄 및 기타 세라믹 분말 원료를 물, 분산제 등과 혼합하여 균일한 반죽을 만듦 - 반죽을 압출기에 넣어 기판의 벌집형 셀 구조로 성형 - 압출된 긴 벌집형 기판을 균일한 길이로 절단 - 절단된 기판을 건조기에서 수분 제거 - 수분을 제거한 기판을 고온 가마에 넣어 세라믹 입자를 결합시켜 다공성 벌집 구조 형성 - 촉매의 활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귀금속(백금, 팔라듐, 로듐)을 분말 형태로 받고 특수 용매에 반응시켜 용해시켜 균일한 귀금속 용액 생성 - 고표면적 산화물 분말을 정제수 및 첨가제와 혼합하여 균일한 워시코트 슬러리 제조 - 귀금속 용액을 슬러리 형태의 워시코트와 혼합하여 촉매 슬러리 제조 - 촉매 슬러리를 세라믹 기판에 분사하여 기판 내부의 미세 채널을 균일하게 코팅한 후 건조 - 고온 가마에서 열처리하여 촉매 완성, 한국으로 수출 <p>2. 한국 제조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한 미국산 촉매의 사양 및 외관 검사 실시 - 블랭킹 라인 장비에 스테인리스 스틸 코일 적재 - 판금 형태로 연속 추출하여 사양에 따라 절단 - 프레스 공정을 통해 개별 구성품 성형 - 지지체로 외부를 감싼 촉매를 셀에 정밀하게 삽입하는 캐닝(canning) 진행 - 주요 스테인리스 스틸 구성품을 용접 지그에 적재하여 고정. - 용접하여 제품으로 완성 - 누출 검사기로 공기압을 사용하여 용접 및 조립의 기밀성과 무결성 검사 - 완제품에 라벨을 부착 <p>3. 포장 후 미국 수출</p>
-------	---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촉매를 지지체로 감싸고, 캐닝하고, 스테인리스강 구성 요소를 제자리에 용접)은 미국산 촉매의 본래의 주요 기능을 변화시키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지 않음
- 추가된 스테인리스강 부품은 촉매를 보호하고 배출 가스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만 수행한다고 판단

결론

- 완성된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어셈블리의 본질은 미국산 촉매에 의해 부여되며, 따라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레코드판

사례명 [레코드판(vinyl record)]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50112(2025.07.03.)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레코드판(vinyl record)
	구성	폴리염화비닐(PVC) 수지로 만든 원형의 평평한 디스크
	용도	아날로그 사운드 재생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스튜디오에서 오디오 콘텐츠(가사, 멜로디 등) 제작, 디지털 녹음 2. 중국 제조공정 : 나선형 오디오 홈을 통해 아날로그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매체(레코드판) 생산 - 래커커팅(lacquer cutting) 공정 : 특수 바늘을 사용하여 온라인 오디오 파일에서 파생된 오디오 신호 진동을 따라 래커로 코팅된 디스크에 미세한 홈을 정밀하게 새김 - 스탬퍼제작 : 비닐 레코드 양면에 홈을 새기는 틀 역할을 함 - 완성된 레코드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되어 한국으로 배송 3. 한국 - 기능 및 외관 검사를 포함한 최종 검사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해당 음반은 전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제조 공정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결론

- 완제품 레코드의 원산지는 중국이 되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대상임



집적회로

사례명 [반도체 집적회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50711 (2025.07.10.)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반도체 집적회로
	구성	실리콘 웨이퍼
	용도	LED 백라이트 컨트롤러용 반도체 IC
	원재료 HTSUS	실리콘 웨이퍼
	완제품 HTSUS	8541.29.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前공정 (한국 내 진행) - 중국산 실리콘 웨이퍼 수입 (HS3818.00-1000) - 웨이퍼 제조 → 프로브 테스트 → 코팅 → 노출 → 현상 → 건식/습식 식각 → PR 스트립 → 산화/확산 → 저압 화학 기상 증착 → 이온 주입 → 화학/물리 기상 증착 → 웨이퍼 뒷면 공정 2. 後공정 (중국 내 진행) - 웨이퍼 장착 → 절단 → 다이본드 → 와이어본드 → 몰드 → PMC → De-Flash → 도금 → 어닐링 → 마킹 → 다듬기/성형 3. 최종 테스트 및 포장 (한국 내 진행)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 (name), 특성 (character), 용도 (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 (name), 특성 (character), 용도 (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되는 前공정에서 확산층, 트랜지스터 게이트, 웰 영역 및 금속 배선층이 형성되며, 이러한 공정의 축적으로 IC의 전기적 특성과 기능이 결정됨
- 중국에서의 後공정은 물리적 패키징과 출하에 필요하긴 하지만, 제품을 취급 및 사용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에 그치며 IC의 전기적 기능이나 설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음
-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

결론

- 물품의 핵심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는 중국산이지만 한국에서의 前공정으로 제품에 주요한 특성인 필수회로를 통합한 직접 회로가 생성되며, 중국에서의 後공정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됨



인스턴트 라면

사례명 [인스턴트 라면]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0178(2025.07.19.)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XL Ramen Noodles with Soup Mix(Hot & Spicy)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말 스프, 건조 어묵·야채 플레이크, 면 ① 면의 구성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미상 : 밀가루, 팜유, 변성 타피오카 전분, 감자 전분, 글루텐, 소금, 마늘가루 등 - 중국 : 리보플라빈 ② 스프베이스 구성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소금, MSG, 고춧가루, 이산화규소, 버섯분말, 글리신, 효모추출물 등 - 한국 : 조미간장분말, 인공쇠고기향, 설탕, 옥수수전분, 인공사골향, 된장분말, 볶음양념분말 등 - 프랑스 : 캐러멜색소 - 인도 : 캡사이신올레오레진
	용도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2104.10.0020
제조공정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중국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와 다른재료를 혼합하여 면 형태로 성형 후 찌기 - 팜유로 튀긴 후 건조 - 포장 후 한국으로 수출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한국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배합비에 따라 원재료를 계량 및 혼합 - 포장 분말스프(한국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계량 → 혼합 → 가열 → 건조 → 분말화(transformation into powder) - 포장 <p>※ 4개의 면, 개별포장된 건조어묵·야채플레이크와 분말스프로 구성되어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p>	

쟁점 사항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2104.10호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1202) General Note 33(o)/Chapter 21/Rule 6』에 따라 다음의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판정 결과)**
 -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말레이시아·인도·프랑스 등의 비원산지 재료는 모두 제21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므로, 제21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은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가능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판정 결과)**
 - 분말스프와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는 한국에서 미리 배합된 재료를 계량하고 혼합하는 방식으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원료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므로 한국산으로 판정됨
 - 면은 중국에서 수행되는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되므로 중국산으로 판정됨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시에는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각각 표기해야함(① 면 :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② 분말스프와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 : ‘Made in South Korea’ 또는 ‘Product of South Korea’)

결론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 구성품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져 제품 전체를 한국산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미국 수출시 각 구성품의 국가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함 (면 : 중국 / 분말스프, 건조어묵·야채 플레이크 : 한국)

히트 펌프

사례명 [히트펌프]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0773(2025.07.21.)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히트 펌프(Heat Pump)
	구성	압축기, 열교환기, 모터 및 팬 어셈블리, 밸브 어셈블리, 제어판, 어큐뮬레이터
	용도	냉난방기의 실외기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p>[상세 공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기, 샤프트 등 주요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공급됨 • 모든 가공 및 조립은 한국에서 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교환기 유닛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구리 튜브 코일을 U자형 성형기에서 절단·성형 - 사각 평판형 핀튜브 조립체 성형 - U자형 튜브를 튜브 핀 튜브 조립체에 납땜하여 열교환기 제작 2. 최종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 그로밋을 압축기 하부에 장착 - 압축기·어큐뮬레이터베이스에 위치·볼트 체결 - 히팅 테이프 볼트 체결 - 고압 파이프 어셈블리 2개 볼트로 고정 - 압축기 리턴 파이프조립(어큐뮬레이터 출구 ↔ 압축기 입구) - 4-방향 밸브 어셈블리 파이프를 유닛 외측으로 위치 - 압축기/어큐뮬레이터 입구와 출구를 납땜 후 고정 - EEV(전자팽창밸브) 어셈블리서포트 지지판에 고정 - 열교환기 유닛베이스에 나사 체결 - 납땜 3지점 : (1) 서비스 밸브 어셈블리 ↔ EEV, (2) EEV ↔ 콘덴서 파이프, (3) EEV 관련 구리 파이프 접점 - 외장 패널베이스에 나사 체결 - 플라스틱 커버장착 - 보조부품 설치 : 센서, 사운드 재킷, EEV 코일, 솔레노이드 밸브 - 진공 공정 - 충전 공정 - 팬 어셈블리설치·고정 - 메인 컨트롤 패널설치·고정 - 완성 	

쟁점 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1940)*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며,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다른 국가에서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ing)이나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만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의 정체성(identity)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 **(판정 결과)**
 - 온도 변화 공정에 기여하는 부품을 포함한 중국산 부품이 한국에서 최종 조립되어 히트 펌프로 완성됨
 - 최종 조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나사 및 볼트 체결, 납땜과 같은 공정으로 복잡하지 않음
 - 여기서 납땜은 배관을 열교환기에 접합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용접공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국산 부품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히트 펌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결론 ● 한국에서의 단순 조립 및 가공 공정은 중국산 부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해당 물품은 중국산으로 판정됨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사례명 [전자식 공압 요추 지지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50620(2025.07.24.)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전자식 공압 요추지지 시스템(7CELL)
	구성	전기식 공기 펌프 모터, 스프링 장착 에어 튜브, 플라스틱 에어 튜브
	용도	자동차 좌석 등받이 하단 부분에 장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한국 공장에서 한국산 부품과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제품(7CELL) 제조	
	한국산 부품	중국산 부품

· 금액 기준 부품의 약 70% 한국에 있는 공급 업체가 조달 및 제조

· 전기식 공기 펌프 모터
· 스프링 장착 에어 튜브
· 전원 연결용 코팅 와이어
· PET 맞춤형 에어셀 또는 블래더
· 플라스틱 에어 튜브
· ECU 통합용 플라스틱 씰이 장착된 구리 솔레노이드 밸브, 미국 차량 시트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클립

1. ECU 제조 및 프로그래밍

- 7CELL 장치에서 사용할 ECU를 차량 모델별로 생산
-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사양과 입력자료 수령
- 표면 실장 기술(SMT)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 트랜시버 및 기타 부품을 PCB에 배치
- 차량별 펌웨어를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적재(로딩)
- 8개의 구리 솔레노이드 밸브와 고무 씰을 PCB에 부착
-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PCB 어셈블리 포장
- 각 PCB에 부착된 바코드를 사용하여 차량 모델별 ECU 추적, 라벨링, 포장

2. 와이어 서스펜션 프레임 제작 : 탑승자의 등에 닿는 7CELL의 느낌을 부드럽게 하도록 프레임 설계

- 한국산 철강으로 한국에서 제조된 미절단 와이어와 코팅 와이어를 한국 생산자가 프로그래밍한 와이어 벤딩(bending)기계에 투입
- 벤딩 기계는 코팅 와이어를 절단하고 구부러 두 개의 수직 지지대를 만들고, 수평 교차 와이어를 절단하고 구부러서 두 개의 수직 와이어에 고정함

3. 부품 조립

- 7CELL 조립(방음, 튜빙, 고정 등 수동 및 반자동 하위 공정이 모두 포함)

① 방음

- 국내 산업용 직물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부직포 방음 원단으로 와이어 서스펜션 프레임, ECU, 에어 펌프, 에어 튜브, 블래더 및 기타 부품들을 덮는 작업을 하며, 원단 조각은 특정 차량 모델의 차량 시트 크기와 모양 사양에 맞춰 제작됨
- 방음 원단으로 덮는 작업을 위해서, 별도의 지지 와이어(중간 와이어라고 함)를 서스펜션 프레임에 펀치 클램프로 고정한 후, 양쪽에 미리 절단된 방음 원단을 접착하여 감싸는 선행 작업이 필요함
- 각 구성품은 특정 차량 모델 및 트림별 위치 맵에 표시된 정확한 위치에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서스펜션 프레임에 수동으로 고정
- 상부와 하부로 나뉜 플라스틱 블래더 쉘케이스(한국에서 사출성형으로 제조)에 들어 있는 2개의 플라스틱 "볼스터(bolster)" 블래더를 수동으로 볼트 고정

② 튜빙

- 튜빙 기계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플러그와 소켓을 공기 펌프 튜브에 부착
- ECU를 서스펜션 프레임에 부착하기 전, 7개의 공기 셀 튜브 끝부분을 별도의 튜빙 기계를 사용하여 ECU 밸브에 부착
- 튜빙 기계에서 밸브 스템에 완전히 안착되도록 일정한 힘을 가하는 단계는 ECU와 각 공기 셀 간 차질 없는 공압 통신을 위한 시스템 기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정렬 불량이나 불완전한 밀봉은 시스템 고장 또는 요추 지지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③ 조립 마감

- ECU를 서스펜션 프레임에 연결하여 조립 과정 완료

4. 품질 관리 및 성능 테스트

- 제품이 설계 사양 및 성능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
-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EOL(End-of-Line) 검사 장비에 각 유닛 연결
- ECU 초기화, 진단 신호 검사, 펌웨어 무결성 확인, 펌프 작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밸브 스위칭 회로 전반에 걸친 전기적 연속성 확인
- 바코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제품에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고, 불합격 제품은 문서화된 결함 코드 및 처리 지침과 함께 재작업 스테이션으로 이송
-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QC 스티커를 부착하고 추적 시스템에 기록

쟁점 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상당 수의 부품 및 구성품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SMT 공정을 통한 PCBA제조를 포함한 제조 공정이 충분히 "복잡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한국산이 아닌 부품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될 때 상당한 변형을 거쳐 개별적인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품목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갖게 됨

결론

- 해당 제품 7CELL의 원산지는 한국이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지 않음



관세청의 승인없이 본자료의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기계 장비용 유압 실린더

사례명 [기계장비용 유압 실린더]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1234(2025.07.31.)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Hydraulic Cylinders for mechanical equipment
	구성	Tubes, Collars(고정 장치), Inner/Outer Rings, Head Covers, Rods, Knuckles, Pins, Bushings, Seals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압 실린더는 유압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직선 운동을 생성건설, 제조,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무거운 하중을 밀거나 당기거나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8412.21.0075
제조 공정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57개 부품(대부분 한국산, 일부는 일본, EU, 중국에서 조달)으로 한국에서 유압 실린더 생산<ul style="list-style-type: none">봉 부품 제조(원강 준비, 외경 및 피스톤 면적 가공, 연마, 버핑, 도금, 너클 용접)봉 전체 그룹 조립(봉 커버 그룹, 피스톤 그룹, 피스톤 너트 등 조립, 모든 부품을 체결)튜브 부품 제조(중속강관 절단 및 가공, 용접 칼라 및 헤드 커버, 내부 링 조립)봉 전체 그룹과 튜브 부품 연결완제품 유압 실린더 → 미국 수출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원자재는 모두 유압 실린더 제품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가공 단계를 아직 거치지 않은 단순한 부품들이며, 모든 제조 공정은 한국에서 수행됨

- 각 단계에서 부품이 조립될 뿐만 아니라 재료의 형태, 기능 및 특성이 유압 실린더의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크게 변경되므로, 중국·EU·일본에서 조달된 개별 부품 및 구성 요소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 일부 부품이 중국산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인 유압 실린더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판정됨



정맥 주사용 주사제

사례명 [정맥 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0938(2025.08.01.)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INFLECTRA for injection
	구성	
	용도	•인플렉트라는 중양 과사 인자(TNF) 차단제 •크론병, 소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소아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및 판상 건선 치료를 위해 정맥주사(IV)로 투여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8473.30.5100
제조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공정 - 유효 의약 성분(API) 또는 약물 성분(DS) 제조 후 포르투갈로 수출 2. 포르투갈 제조공정 : 완제 형태의 바이알 제조 - API와 부형제(excipients)를 함께 조제하여 바이알에 충전 - 동결건조 후 100mg 용량의 분말 형태인 'unlabeled drug product(uDP)'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 3. 미국 제조공정 - 라벨링 및 포장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활성 성분(한국 제조)을 부형제와 함께 포르투갈에서 100mg 바이알 형태로 제형화하는 과정은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 됨

※참고

- 이 상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관리하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또는 2002년 공중보건안보 및 생물테러 대비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생물테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결론

- 포르투갈에서의 제형화 과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플렉트라 주사제 최종 약품의 원산지는 Infliximab-dyyb라는 유효성분을 제조한 한국으로 판정됨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사례명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52190 (2025.08.22.)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구성	• 디스펜서 유닛(부품 번호 ADPK40-S00062)과 파워 캐비닛(부품 번호 APCK60-S00006) - 디스펜서 유닛은 전기 제어 장치 (electrical control apparatus), Power supply, 냉각 시스템이 내장된 인클로저로 구성 - 파워 캐비닛은 금속 캐비닛 내에 다양한 파워 모듈 어셈블리로 구성
	용도	차량 충전 스테이션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파워 캐비닛용 파워 모듈 생산 2. 한국 제조 공정 1) 표면실장기술(SMT)로 디스펜스 유닛과 파워 캐비닛에 사용될 PCBA 생산 2) 디스펜스 유닛 조립 - 1)에서 제조한 PCBA를 enclosure에 설치 - HMI 화면, 냉각 장치, 각종 차단기, 접속 장치, 케이블을 enclosure과 조립 3) 파워캐비닛 조립 - 중국산 파워 모듈을 enclosure에 설치하고 한국산 PCBA와 결합 - 릴레이, 차단기, 단자대 (terminal blocks), 모터 제어 어셈블리를 enclosure과 조립 4) 시스템 완성 - 두 개의 디스펜서 유닛과 한 개의 파워 캐비닛을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 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 (name), 특성 (character), 용도 (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 (name), 특성 (character), 용도 (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SMT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핵심 제어 PCBA가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함
- 또한 중국에서 제조된 파워모듈이 중요한 구성요소이긴 하지만, PCBA와 정밀한 조립과정이 완제품의 의도된 기능을 부여
-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은 3개의 구성품 (두 개의 디스펜서 유닛과 한 개의 파워 캐비닛)이 함께 수입될 경우 한국산으로 간주

결론

- 한국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며, 해당 제품은 3개의 구성품이 함께 수입될 경우 한국산으로 간주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사례명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2536 (2025.09.09.)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자동차용 에어백 모듈(조명 포함)
	구성	•에어백 쿠션 및 플레이트 : 태국산 •커버 및 조명 : 한국산 •인플레이터 : 미국산 •하드웨어 : 중국산 •라벨 : EU산
	용도	차량 충돌 감지 시 에어백 팽창으로 탑승자 보호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공정	[상세 공정] 1. 각 부품들을 한국에서 최종 조립 - 부품별로 서로 삽입, 나사로 조립 - 높이 검사 및 경적 테스트 실시 2. 조립 후 완제품으로 최종 검수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여부]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 조치에 대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 외국산 부품이 미국에서 단순 조립되는 경우, 새로운 기능이나 특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정
- 원산지 판정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여부가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 단순한 가공이나 경미한 작업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을 명시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함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제품이 가공 후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측면에서 기존 제품과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순한 가공이나 조립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제품의 상업적 실질이 중요함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대만에서 제조된 핸드툴 부품을 미국에서 조립한 경우, 미국 내 가공은 단순 조립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 원부품은 조립 전후에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며, 상업적으로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므로, 원산지는 여전히 대만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여 가스를 발생시키고, 에어백 제어 장치의 신호에 따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구동원으로써 최종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 주장
- 그러나 CBP는 인플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충돌 시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한 에어백이므로 에어백이 모듈 전체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판단
- 각 부품은 한국 도착 시 최종 용도가 확정되어 있으며, 조립 과정에서 그 특성이나 기능이 변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단순조립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1304』 제정 목적에 대해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을 어떤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표시가 구매 시점에 최종 구매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취지”라고 설명함

참고 판정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결정시 판단과 동일

결론

-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의 무역법 제301조 무역제재 조치 및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태국임



피하주사제

사례명 [피하주사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N352591 (2025.09.18.)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ZYMFENTRA™ (Infliximab-dyyb) 주사제
	구성	• 유효성분(API) : Infliximab-dyyb • 비활성 성분 • 주사기, 바늘 보호장치가 있는 주사기 또는 자동주사기 펜
	용도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가진 성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종양괴사인자(TNF) 차단제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싱가포르 제조공정 - 유효성분(API) 또는 약물 원료(DS) 제조 - 여러 비활성 성분과 혼합 2. 독일 제조공정 - 제형화된 DS를 주사기 또는 자동 주사기 펜에 120 mg/mL씩 충전하여 최종 투여제형 의약품 생산(추가적인 부형제 또는 기타 물질 첨가 없음) 3. 한국 제조공정 - 사전 충전된 주사기 및 자동주사기 펜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하여 투여제형 완제의약품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독일 및 한국에서 수행되는 충전이나 포장과 같은 가공 공정은 API 또는 DS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피하주사제의 원산지를 유효성분(API)의 생산국인 싱가포르라고 판정함

결론

- 피하주사제의 원산지는 유효성분(API)이 제조된 싱가포르임



마이크로컨트롤러 집적회로 칩

사례명 [마이크로컨트롤러 집적회로 칩]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N352821 (2025.09.22.)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Micro Controller IC (제품번호 : KM1M7AF52NXW, 모델명 : MOS Microcomputer IC)
	구성	다이, 실리콘, 금속막, 은 에폭시, 본딩 와이어, 펴웨어 등
	용도	전력 전자 제어(DC/DC 컨버터 및 DC/AC 인버터 동작 제어, 배터리 및 전력망 전압/전류 모니터링, PLC 컨트롤러 및 회로와 데이터 교환 등)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 웨이퍼 생산 - 잉곳 제조 → 웨이퍼 절단 → 웨이퍼 표면 연마 - 포장 후 싱가포르로 수출 2. 싱가포르에서 전공정(Front-end) 수행 - 박막 증착 → 레지스트 코팅 → 노광 → 현상 → 식각 → 레지스트 제거 → 불순물 도핑 → 금속 배선 공정 - 포장 후 일본으로 수출 3. 일본에서 프로브 시험 수행 4. 중국에서 후공정(Back-end) 수행 - 칩 세정 →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 → 다이 본딩 → 와이어 본딩 → 몰딩 → 몰드 후 경화 → 마킹 → 타이 바 절단 → 절단 및 벤딩 → FT 시험 → 자동 광학 검사(AOI) → 외관검사 - 포장 후 한국으로 수출 5. 한국에서 ROM 기록 공정 수행 -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복잡한 전공정은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의 전기적 설계와 기능을 확립하여 본질을 부여하고, 비기능성 웨이퍼를 사전 결정된 최종 용도를 갖는 다수의 반도체 집적회로 다이를 포함하는 웨이퍼로 변환함으로써 새로운 품명, 특성, 용도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므로 원산지를 싱가포르로 판정함
- 반면, 중국에서의 후공정 및 한국에서의 ROM 기록 공정은 추가적인 전기적 설계나 기능을 부여하거나 사전 결정된 최종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며, 싱가포르에서 확립된 제품의 정체성과 최종 용도가 유지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결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마이크로컨트롤러 집적회로 칩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싱가포르임



저전압 케이블

사례명 [저전압 케이블]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3664(2025.09.30.)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low voltage power cables(품목명 : XHHW, SER, MC)
	구성	• XHHW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XPLE) 절연체로 코팅된 알루미늄 도체 • SER 케이블 : XHHW 도체 코어, 섬유 테이프, PVC 절연층 • MC 케이블 : XHHW 도체 코어, 알루미늄 피복
	용도	• XHHW 케이블 : 변전소,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산업 및 상업용 전력 공급 • SER 케이블 : 주거 및 상업용 건물 내부 전력 공급 • MC 케이블 : 상업용 건물 및 산업 시설 내 전기 배선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인발, 어닐링, 연선 공정으로 생산한 알루미늄 와이어 도체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 XHHW 케이블 : 압출 공정을 통해 가교 폴리에틸렌(XPLE) 절연 처리하여 완성 - SER 케이블 : XHHW 도체 코어들에 압출 공정으로 절연 처리하고 2개 혹은 4개 번들로 구성된 후 섬유 테이프로 감싸고 최종 PVC 절연층을 압출하여 완성 - MC 케이블 : XHHW 도체 코어들에 압출 공정으로 절연 처리하고 적절한 형태의 번들로 구성된 후 알루미늄 테이프 실드로 감싸 완성 3. 완성된 케이블 검사 후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저전압 케이블에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는 전기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도체이며, 한국에서 수행된 절연 및 기타 최소한의 공정은 단순하여 알루미늄 도체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도체의 원산지인 중국임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저전압 케이블의 원산지는 중국임



드론 세트

사례명 [드론 세트]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2538(2025.10.03.)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CoDrone EDU(JROTC edition)
	구성	•드론, 무선 컨트롤러,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제품 설명서 - 드론의 크기는 138.8mm x 138.5mm x 34.8mm이며, 무게는 54.8g
	용도	교육 혹은 일반 소비자 레크리에이션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다음의 구성 요소를 한국으로 수입	
	구성 요소	생산국
	구동 모터(드론용), 진동 모터(컨트롤러용)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기, 트랜지스터, 센서, 커넥터, 배터리, 충전기, 플라스틱 케이스 등	중국 중국,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등
2. 한국 제조공정 1)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PCB에 표면실장기술(SMT)로 각종 전자부품을 장착 2) 완성된 PCBA를 추가 부품과 함께 드론 및 컨트롤러 케이스에 조립 3) 구동 모터를 드론에, 진동 모터를 컨트롤러에 조립 4) 비행, 방향 제어 및 코딩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탑재 5) 소매용 박스에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신청인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드론의 상승, 하강, 방향 전환 등의 핵심 기능이 수행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구성 요소에 대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반면 CBP는 드론에 장착된 구동 모터가 핵심 부품으로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게 하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므로 드론 세트의 원산지를 모터의 원산지인 중국으로 판정함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드론 세트의 원산지는 중국임

실리콘 음극 활물질

사례명 [실리콘 음극 활물질]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1688(2025.10.16.)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Silicon anode active material (Silicon AAM)
	구성	일산화규소, 탄소 전구체
	용도	프리미엄 전기차 및 첨단 군사 장비에 탑재될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 일부로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공정	[상세 공정] 1. A국산 또는 B국산 일산화규소, C국산 탄소 전구체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1) 일산화규소 분쇄 후 탄소 전구체와 혼합 2) 혼합물 고온 열처리 - 탄소 전구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불순물 제거 - 간존 탄소의 탄화 과정을 거쳐 일산화규소 입자를 감싸는 비정질탄소층 형성 3) 탈응집 공정 - 탄소 코팅 입자 분리 및 특정 대구경 입자 배제 4)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한국에서의 제조공정으로 일산화규소의 표면적, 개별 크기, 화학적 조성이 변화하고 전기 전도성, 초기 충전 성능 향상, 충전 및 방전 반복시 배터리 용량 유지율 증가 등 전기화학적 특성이 변화 하였음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도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으므로 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원산지는 한국이므로, 제301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와이어링 하네스

사 례 명 [와이어링 하네스]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4492(2025.10.17.)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 MX5 Ambient Light Wiring Harness(부품번호 : 3050020015Z) • ME1 P/HDL Mood Lamp FR Wiring Harness(부품번호: 2MEZC44016001)
	구 성	• 절연 도체선(한국산) • 플라스틱 외피 • 단자 및 커넥터(한국산)
	용 도	• 차량 내부 무드 조명 및 조명 제어 보드와 전원 공급원을 연결 • MX5, ME1는 사용되는 차량만 상이할 뿐 용도는 동일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544.30.0000
제 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산 절연 도체선 준비 2. 제조공정(MX5 모델은 베트남, ME1 모델은 한국에서 공정 수행) 1) 한국산 절연 도체선을 규격 길이로 절단 2) 한국산 단자 및 커넥터를 전선 끝단에 부착 3) 도체선 다발화, 테이핑 및 기능 시험 4)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한국산 도체선이 핵심 부품으로서 와이어링 하네스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커넥터 및 단자를 부착하는 제조공정은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여 도체선을 새롭고 다른 상업적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체선의 원산지인 한국을 M5 모델과 M1모델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MX5 모델과 ME1모델의 원산지는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도체선을 생산한 한국임



자동차 도어 엿지 가드

사 례 명 [자동차 도어 엿지 가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4494(2025.10.31.)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자동차 도어 엿지 가드(모델명 : GP-mini)
	구 성	TPU(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본체, 3M 접착 테이프
	용 도	차량 도어 가장자리에 부착하여 도어 작동 중 인접 표면과의 접촉 충격을 흡수 및 분산하고 잠재적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708.29.5160
제 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TPU 펠릿 조달하여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1) 펠릿 건조 및 혼합 2) 사출성형기에 투입하여 일체형 구조로 성형 3) 한국산 ABS 수지를 정밀 금형을 통해 "G" 로고 형태로 사출성형 4) 다단계 전기도금 공정 후 로고를 사전에 성형된 TPU 본체에 삽입 5) 게이트 및 버 제거와 종합검사 6) 미국산 3M 아크릴 폼 양면 테이프를 TPU 제품에 부착 7) 블리스터 팩에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플라스틱을 특정 형상으로 성형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음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555772(1991.01.14.)*

- (판정 결과)

- HQ 555772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성형 및 형상화 공정을 통해 중국산 TPU 펠릿은 식별 가능한 자동차 도어 엿지 가드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며, 다른 한국산 또는 미국산 구성품들도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드의 일부가 되므로 제조공정을 수행한 한국을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 론

- 자동차 도어 엿지 가드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오징어 젓갈

사례명 [오징어 젓갈] 무역법 제301조 적용목적의 원산지 판정,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사례번호 NY N355190(2025.11.06.)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Banchandanji Jeotgal(Seasoned Squid, 양념 오징어 젓갈)
	구성	•염장 오징어(중국산) •양념류: 물엿, 고춧가루, 냉동 다진 마늘, 파프리카 추출물, 설탕, 냉동 홍고추, 생마늘, 참깨 등
	용도	즉석 섭취용(Ready-to-eat) 반찬 또는 조미식품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1605.54.6030
제조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오징어 세절 및 염장 후 한국으로 수출 2. 한국에서 자체 조미 혼합물(proprietary seasoning mix)과 혼합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목적의 원산지 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조미 혼합물을 첨가하는 공정은 단순하여 중국산 오징어의 품명, 특성, 용도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는 오징어의 원산지인 중국임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1605.54호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 GN33(o)/Chapter 16에 따라 다음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판정 결과)**
 - 염장 오징어, 고춧가루, 생마늘, 참깨 등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16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므로 제1605.54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함
 -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은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가능

결론

- 한국에서 수행한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베어링 쉘

사례명 [베어링 쉘]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5135(2025.11.10.)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베어링 쉘(부품번호 : HFZLQ18-200, HFNLK22-225, HFNLB28-280)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부 반원통형 쉘, 다월핀, 볼트 하우징(한국산)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프트 또는 액슬이 쉘의 중심 구멍에 삽입되면 표면을 따라 오일이 순환하는 유체 윤활 과정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회전하는 샤프트의 하중을 지지 전기모터, 발전기 등 다양한 용도에 맞게 적절히 위치하도록 하우징 장착 가능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강판을 한국으로 수입 한국 제조공정 <p>[제품 1] 베어링 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자형으로 레이저 절단 측면, 내부, 외부 표면이 동심 정렬을 이루도록 기계 가공 그루빙 공정을 통해 윤활유 경로 형성 드릴링 공정을 통해 상·하부 섹션을 고정할 수 있는 구조 형성 완성된 상·하부 섹션에 도금 처리 다월 핀과 볼트를 사용하여 상·하부 체결 <p>[제품 2]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까지 동일 6)까지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베어링 쉘을 한국산 하우징에 삽입 회전방지 핀을 사용하여 제자리에 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베어링 쉘 검사 후 포장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중국산 강판은 한국에서의 절단, 가공, 그루빙, 드릴링 공정을 통해 오일 필름이 형성될 수 있는 수렴 형상 및 유로의 정밀성을 갖게 되어 평축 베어링으로 기능하는 쉘로 품명, 특성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쉘의 경우에도 베어링 쉘을 하우징에 삽입하는 것은 단순 공정이며, 하우징과 베어링 쉘의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쉘의 원산지 또한 한국임

결론

- 베어링 쉘과 하우징이 포함된 베어링 쉘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레이저 마킹기, 조각·절단기, 조각기

사례명 [레이저 마킹기, 조각·절단기, 조각기]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5137(2025.11.18.)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이저 마킹기(모델 번호 : MAGIC-L3) flat plus ring 조각·절단기(모델 번호 : MAGIC-E7) flat plus ring 조각기(모델 번호 : MAGIC-S7)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구성품 : 베이스 또는 베이스 플레이트, 플레이트·커버류, 헤드, 전기 보드 및 배선, 라벨, 보호필름 MAGIC-L3 레이저 마킹기 추가 구성품: Z축 가이드 플레이트, 회전 슬라이드, 레이저 소스 MAGIC-E7 조각·절단기 추가 구성품 : 바이스, A축, X축 구성품, 회전 스펀들, 절삭공구(엔드밀 또는 V-커터) MAGIC-S7 조각기 추가 구성품 : 바이스, 평면·회전 클램프, A축, X축 벨트, 카메라, 레이저, 모터 시스템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GIC-L3 레이저 마킹기 : 귀금속 제품에 정밀하고 효율적인 마킹 및 절단 작업 가능한 레이저 마킹 및 절단 기계. 고대비 마킹이 가능하며 주로 금속 가공에 사용 MAGIC-E7 조각·절단기 : 반지, 펜던트, 팔찌, 뱅글 등 보석류의 조각 및 절단에 사용되는 데스크탑 조각·절단기. 깊은 조각 및 절단, 금속 표면 조각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밀링 머신으로 기능. MAGIC-S7 조각기: 반지, 펜던트, 뱅글, 팔찌 등 보석류의 가공용 데스크탑 조각기. 주로 다이아몬드 팁 공구로 금속 표면을 긁어내는 방식의 조각 작업에 활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GIC-L3 레이저 마킹기 : 8456.11.1010 MAGIC-E7 조각·절단기 : 8459.61.0080 MAGIC-S7 조각기 : 8461.90.3080

제조공정	[상세 공정]
	<p>[제품 1] MAGIC-L3 레이저 마킹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 수입 및 한국산 부품 준비 한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후면 커버, Z축 가이드 플레이트, 회전 슬라이드, 헤드를 주요 구성요소로 조립 전면 플레이트, 회전 슬라이드, 중간 플레이트, Z축 가이드 플레이트를 베이스에 장착 전기 보드 설치, 베이스 배선 연결 및 추가 배선 정리 이동 커버 설치, 기계를 원점 위치로 설정 후 기능 검사 후면 커버 설치 및 라벨 부착 품질검사 후 보호필름 부착 및 선적용 포장
	<p>[제품 2] MAGIC-E7 조각·절단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부품 수입 및 한국산 부품 준비 한국 제조공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헤드, A축, 바이스 및 베이스 플레이트 등 주요 구성품 개별 조립 플레이트 장착 후 헤드 및 X축 구성품을 고정하여 베이스 구조 형성 전기 보드와 배선 연결 및 정리 기계를 원점 위치로 설정, 마킹, 절단 및 A축 성능 검사 보호 커버 및 라벨 설치 품질검사 후 보호필름 부착 및 선적용 포장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 1304』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목적이라고 판시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한국산 및 중국산 부품들은 한국에서의 제조공정 이전에는 마킹기, 조각·절단기, 조각기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기능적 능력이 없었으나, 숙련된 기술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립, 배선, 보정 등을 통해 각 부품은 개별 정체성을 상실하고 최종 제품의 구성품이 되어 새로운 품명, 특성, 용도를 갖게 되므로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레이저 마킹기, 조각·절단기, 조각기의 원산지는 모두 한국임



자동차 도어 가드

사례명 [자동차 도어 가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5320(2025.11.20.)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자동차 도어 가드(모델명 : Neo Guard)
	구성	• TPE 본체/고무 바, ABS 아머 캡(고무 바용 플라스틱 커버) : 한국산 • 3M 접착 테이프 : 미국산
	용도	차량 도어에 부착하여 주로 좁은 주차 공간이나 다른 차량과 근접한 상황에서 인접한 차량, 벽, 또는 물체와 강하게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도어 손상(우발적 충격, 찌그러짐, 긁힘, 문콕 등) 방지
	원재료 HTS US	
	완제품 HTS US	8708.29.516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여러 국가의 부품 및 포장재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1) 한국산 TPE 펠릿을 혼합, 건조 및 성형하여 본체 또는 고무 바 제조 2) 한국산 ABS 펠릿을 착색, 혼합, 건조 및 성형하여 아머 캡 제조 3) 미국산 3M 테이프를 한국산 3M 프라이머로 고무 바에 접착 후 아머 캡 장착 4) 한국산 알코올 스왑, 일본산 마스킹 테이프, 중국산 라벨과 함께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고무 바와 아머 캡은 모두 한국산 재료인 TPE 및 ABS 펠릿으로 생산되고, 해당 펠릿은 한국에서 성형 공정을 거치면서 식별 가능한 자동차 도어 가드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한국을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자동차 도어 가드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구리봉 및 구리선

사례명 [구리봉 및 구리선]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5323(2025.11.20.)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구리봉, 구리선(직경 1.63mm~2.58mm)
	구성	정제 구리
	용도	미국 내 전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에 공급되어 전기 도체 및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가공용 소재로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 구리봉 : 7407.10.5050 • 구리선 : 7408.19.003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미국 내 제조공정으로 발생한 구리 스크랩을 한국으로 운송 2. 한국에서 구리봉, 구리선 제작 후 미국으로 수출 [제품 1] 구리봉 - 구리 스크랩 용해 후 봉 형태로 주조 - 직경 축소를 위해 압연 - 검사 후 포장 [제품 2] 구리선 - 구리 스크랩 용해 후 봉 형태로 주조 - 직경 축소를 위해 압연 - 선 형태로 인발 - 검사 후 포장 3. 미국 내 전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에서 인발, 연선, 절연, 피복 등 추가 가공하여 전기 도체 및 전력 케이블 생산	

쟁점사항

- 무역확장법 제 232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단시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한국에서 수행된 용해, 주조, 압연, 인발, 검사, 포장 공정은 구리 스크랩을 별개의 제품인 구리봉 및 구리선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결론

- 제232조 적용 목적상 구리봉과 구리선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클렌저

사 례 명 [클렌저]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5536(2025.11.24.)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DR. MELAXIN MELTING CLEANSER 150ML
	구 성	계면활성제 및 기타 물질, 플라스틱 용기
	용 도	부드러운 거품을 생성하여 메이크업을 녹이고 피부 불순물을 제거하는 피부 세정제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3401.30.5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제조과정 - 용융 → 혼합 → 냉각 → 혼합 → 가용화 → 혼합 → 냉각 → 탈기 → 여과 → 보관 2.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C.A.D. 98) (1940)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 1304』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목적이라고 판시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판정 결과)
- 계면활성제 등 원재료는 한국에서의 제조공정을 통해 새로운 상품인 클렌저로 실질적으로 변형 되므로 한국을 최종 제품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 론

- 원산지 표시 목적상 클렌저의 원산지는 한국임



즉석라면

사례명 [즉석라면] 원산지 표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사례번호 NY N355178(2025.11.24.)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매운 까르보크림맛 즉석라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 : 밀가루(중국산) •분말 수프 베이스 	<table border="1"> <tr> <td>설탕, 식물성 크리머, 식물성 치즈 시즈닝, 인공 치즈 향료, 팜유, 가수분해 밀단백, 마늘분말, 흑후추 시즈닝</td> <td>한국산</td> </tr> <tr> <td>글루탐산나트륨(MSG), 말토덱스트린, 소금</td> <td>중국산</td> </tr> <tr> <td>디소듐 5</td> <td>인도네시아산</td> </tr> <tr> <td>파슬리 플레이크</td> <td>이집트산</td> </tr> <tr> <td>백후추 분말</td> <td>베트남산</td> </tr> </table>	설탕, 식물성 크리머, 식물성 치즈 시즈닝, 인공 치즈 향료, 팜유, 가수분해 밀단백, 마늘분말, 흑후추 시즈닝	한국산	글루탐산나트륨(MSG), 말토덱스트린, 소금	중국산	디소듐 5	인도네시아산	파슬리 플레이크	이집트산	백후추 분말	베트남산
		설탕, 식물성 크리머, 식물성 치즈 시즈닝, 인공 치즈 향료, 팜유, 가수분해 밀단백, 마늘분말, 흑후추 시즈닝	한국산										
	글루탐산나트륨(MSG), 말토덱스트린, 소금	중국산											
	디소듐 5	인도네시아산											
	파슬리 플레이크	이집트산											
백후추 분말	베트남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상 수프 베이스 	<table border="1"> <tr> <td>설탕, 물, 간장, 대두유, 옥수수시럽, 양파, 가수분해 대두 및 밀단백, 옥수수전분, 가수분해 옥수수단백, 고추장, 매운 고추 시즈닝, 흑후추 시즈닝, 마늘추출물, 카레분말,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td> <td>한국산</td> </tr> <tr> <td>글루탐산나트륨(MSG), 효모추출물, 매운 고춧가루, 구연산, 소르빈산칼륨</td> <td>중국산</td> </tr> <tr> <td>디소듐 5</td> <td>인도네시아산</td> </tr> <tr> <td>파프리카 올레오레진, 캡시컴 올레오레진</td> <td>인도산</td> </tr> <tr> <td>효모추출물 2</td> <td>독일산</td> </tr> <tr> <td>소금</td> <td>원산지 미기재</td> </tr> </table>	설탕, 물, 간장, 대두유, 옥수수시럽, 양파, 가수분해 대두 및 밀단백, 옥수수전분, 가수분해 옥수수단백, 고추장, 매운 고추 시즈닝, 흑후추 시즈닝, 마늘추출물, 카레분말,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한국산	글루탐산나트륨(MSG), 효모추출물, 매운 고춧가루,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중국산	디소듐 5	인도네시아산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캡시컴 올레오레진	인도산	효모추출물 2	독일산	소금	원산지 미기재
설탕, 물, 간장, 대두유, 옥수수시럽, 양파, 가수분해 대두 및 밀단백, 옥수수전분, 가수분해 옥수수단백, 고추장, 매운 고추 시즈닝, 흑후추 시즈닝, 마늘추출물, 카레분말,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한국산												
글루탐산나트륨(MSG), 효모추출물, 매운 고춧가루,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중국산												
디소듐 5	인도네시아산												
파프리카 올레오레진, 캡시컴 올레오레진	인도산												
효모추출물 2	독일산												
소금	원산지 미기재												
용도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즉석 컵라면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2104.10.0020												
제조공정	<p>[상세 공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면 제조 후 한국으로 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와 다른 원재료를 혼합하여 면 형태로 성형 - 증숙, 팜유에서 유탕, 건조 - 박스당 약 80개 단위의 플라스틱 벌크 포장 한국에서 분말 및 액상 수프 베이스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배합비에 따라 원재료 계량 및 혼합 - 개별 포장 용기에 면, 분말 및 액상 수프 베이스를 넣은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 1304』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목적이라고 판시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거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C.A.D. 98)(1940)*

- (판정 결과)
 - 즉석라면의 구성요소 중 분말 및 액상 수프 베이스의 경우 한국에서 사전 배합된 원재료를 계량·혼합하여 생산하는 공정을 통해 원재료가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인 식품 조제품의 필수 구성요소가 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므로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 면의 경우 중국에서 밀가루를 다른 원재료와 혼합하고 성형·증숙·팜유 유탕·건조·벌크 포장을 통해 제조되는 공정으로 개별 원재료는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이후에 한국에서 면을 박스에서 꺼내 검사하는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함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2104.10호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 (19U.S.C. § 1202) General Note 33(o)/Chapter 21/Rule 6」에 따라 다음의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
- (판정 결과)
 -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들은 모두 제21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 되므로 제2104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결론

- 즉석라면의 원산지는 각각의 구성요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의 원산지는 중국, 분말 및 액상 수프 베이스의 원산지는 한국임
-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

사례명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6155 (2025.11.26.)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부품번호 : SZ000)
	구성	절연 전선(한국산), 커넥터, PVC 튜브 등
	용도	차량의 스티어링 칼럼 내부에서 차량 전반에 각종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산 절연 전선을 베트남에서 수입 2. 베트남 제조공정 - 절연 전선을 필요한 길이로 절단 - 절연 전선 끝단의 피복 제거 후 커넥터 조립 - 전선들을 번들로 묶은 후 PVC 튜브로 덮고 테이프로 함께 감음 - 기능 검사 후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한국산 절연 전선이 완성품의 특성을 부여하며, 베트남에서 수행된 번들링 및 커넥터 부착 등의 공정은 단순하여 절연 전선을 새롭고 다른 상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결론

- 차량용 와이어 하네스의 원산지는 핵심 부품인 절연 전선을 생산한 한국임



아이들러 어셈블리

사례명 [아이들러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6156(2025.12.08.)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아이들러 어셈블리(부품번호 : 14797201)
	구성	•아이들러 휠 서버어셈블리 - 아이들러 로드 (중국산), 아이들러 셸, 브래킷, 부상, 핀, 슝, O-링 •리코일 스프링 서버어셈블리 - 로드, 스프링, 요크, 스톱 플레이트, 스페이서, 브래킷, 너트
	용도	굴착기 하부 주행체에 사용되는 어셈블리로 아이들러 휠 서버어셈블리는 트랙이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리코일 스프링 서버어셈블리는 굴착기 주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함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아이들러 로드를 한국에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1) 아이들러 휠 서버어셈블리 제작 - 아이들러 셸 주조 후 선삭, 드릴링, 태핑하여 최종 공차에 맞게 가공 - 브래킷을 강재로 단조한 후 최종 사양에 맞게 가공 - 각 부품 세척 및 검사 - 아이들러 셸에 부상과 슝 압입 - 핀을 사용해 브래킷을 셸에 고정 2) 리코일 스프링 서버어셈블리 제작 - 요크와 브래킷을 강재로 단조 후 최종 공차에 맞게 가공 - 로드, 스페이서, 너트를 강봉에서 절단 후 가공센터에서 선삭 공정으로 형상 가공 - 개별 부품을 끼워 맞춘 후 나사와 와셔로 고정 - 서버어셈블리 도장 3) 최종 조립하여 아이들러 어셈블리 완성 - 핀, 나사, 와셔를 사용해 두 서버어셈블리 고정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완성된 아이들러 어셈블리의 가치에서 3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중국산 아이들러 로드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한국에서 제조되며, 강봉·금속합금 등 형성의 기초가 된 원재료들은 한국에서의 제조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 특성, 용도를 갖게 되었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결론

- 아이들러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DIY 니트 신발 키트

사례명 [DIY 니트 신발 키트]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5798(2025.12.17.)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DIY 니트 신발 키트
	구성	• PVC 겔창 : 터키산 • EVA 안창, 면사, 인쇄된 패턴 시트 : 한국산
	용도	소비자가 구매 후 직접 신발의 갑피를 뜨개질로 만들고, 제공된 부품을 조립하여 착용 가능한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는 키트
	원재료 HTSUS	• PVC 겔창 : 6406.20.0000 • EVA 안창 : 6406.90.3060 • 면사 : 5207.10.0000 • 인쇄된 패턴 시트 : 4901.99.0050
	완제품 HTSUS	6406.20.0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터키산 PVC 겔창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제조한 부품들과 함께 소매용 박스에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 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세트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제조 공정상 명확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의 원산지를 해당 제품의 원산지로 결정함

- (판정 결과)
- 본 제품은 세트에 분류되고 어느 하나의 제조공정에서도 명확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창과 면사는 상품의 근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겔창에 비해 부차적인 요소이므로 겔창의 원산지인 터키가 전체 세트의 원산지임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 1304』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목적이라고 판시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Treasury Decision (T.D) 91-7, published in Volume 25, Customs Bulletin and Decisions, at6(1991)

-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품명, 특성,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물품은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포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최종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 대신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판정 결과)
- 해당 제품은 터키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국가 모두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매 포장에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함

결론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목적상 DIY 니트 신발 키트의 원산지는 터키임
- 세트에 포함된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공기 필터

사례명 [공기 필터]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6520 (2025.12.18.)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3AC 탈취 필터
	구성	• 사출 코어, 메쉬 : 한국산 • 활성탄 : 중국산 • 탈취 패드, 폴리에틸렌 백 :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
	용도	공기청정기에 삽입되는 교체용 필터로서,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에서 활성탄 생산 2. 한국 제조공정 1) 탈취 필터용 사출 코어와 육각형 메쉬를 열프레스로 용착 2) 1차 트리밍 : 용착된 메쉬를 사출 성형물의 규격에 맞게 절단 3) 활성탄 충전 공정 : 각 코어 셀에 활성탄을 균일하게 충전 4) 2차 열프레스 공정 : 활성탄이 충전된 제품의 반대편에 육각형 메쉬 용착 5) 2차 트리밍 : 제품을 사출 성형 코어의 규격에 맞게 마무리 6) 외관 검사 및 메쉬 파손 등 용착 불량 여부 확인 7) 포장 및 납품 3. 미국으로 수출	

쟁점 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활성탄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 분말이 필터 카트리지에 충전되어 적절한 형태로 준비되기 전까지 활성탄 자체만으로 공기 여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의 제조·조립 공정을 통해 범용 원재료인 중국산 활성탄이 완성된 공기 필터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한 한국을 원산지로 판단함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탈취 필터의 원산지는 한국임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사례명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6930 (2026.01.05.)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구성	• 절연 전선 도체, 단자 : 한국산 • 커넥터 등
	용도	차량 내 조명, 센서, 엔진 제어, 인포테인먼트 등 전기·전자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필리핀에서 여러 국가산 부품을 수입 2. 필리핀 제조공정 - 한국산 절연 전선 도체를 적정 길이로 절단 후 단자를 끝단에 조립 - 도체들을 함께 묶어 번들화하고 필요한 곳에 커넥터 부착 - 기능 시험 후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절연 전선 도체가 핵심적인 전기 전달 기능을 수행하여 와이어 하네스의 특성을 부여하고, 필리핀에서의 조립공정은 한국산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핵심 부품인 절연 전선 도체를 생산한 한국을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의 원산지는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절연 전선 도체를 생산한 한국임



리코일 스프링 어셈블리

사례명 [리코일 스프링 어셈블리]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7198(2026.01.13.)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리코일 스프링 어셈블리(부품번호 : 14737811)
	구성	코일 스프링, 요크, 조정식 유압 실린더 메커니즘(바디 실린더, 로드, 스피로 구성), 기타 부품(중국산 텐션 서포트 및 그 밖의 한국산 부품)
	용도	굴착기 하부구조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크롤러 트랙 시스템의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산 텐션 서포트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1) 나머지 구성품 제조 - SM45C-M2 강을 단조하여 바디실린더와 요크 생산 - 강봉으로 로드와 너트 제작 및 강관으로 스톱 형성 - 각 부품의 대략적인 형상 형성 후 선삭, 드릴링, 탭핑, 연삭, 밀링 공정으로 기계가공 2) 최종 조립 - 바디 실린더에 스피 장착 후 로드 삽입 - 바디의 나사산 개구부에 밸브 체결 - 스톱, 스프링, 요크 추가 후 텐션 서포트, 너트, 와셔를 이용해 전체 부품 고정 - 도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거의 모든 구성품이 한국에서 제조되고, 강봉·강관·원재료 등의 소재는 한국에서의 가공을 통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구성품으로 형성되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므로 한국을 리코일 스프링 어셈블리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리코일 스프링 어셈블리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임



정맥주사용 주사제

사례명 [정맥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7241 (2026.01.21.)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TRUXIMA®(rituximab-abbs) 주사제
	구성	• 유효성분(API, DS) : rituximab-abbs • 부형제 • 500mg 바이알
	용도	Rituxan®(rituximab)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으로 비호지킨 림프종(NHL),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류마티스 관절염(RA),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육아종증(GPA), 현미경적 다발혈관염(MPA), 심상성 천포창(PV) 치료에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유효성분(API 또는 DS)인 rituximab-abbs 제조 2. 독일 제조공정 - 한국산 API를 부형제와 조합하여 제형화 - 500mg 바이알에 충전하여 무라벨 의약품(uDP) 생산 - 라벨 부착 후 포장하여 용량형 완제의약품(fDP) 생산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 11. 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독일에서 수행된 한국산 유효성분을 부형제와 조합하여 500mg 바이알의 용량 형태로 만드는 공정과 라벨링 및 포장 공정은 유효성분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정맥주사용 주사제의 원산지를 유효성분(API)의 생산국인 한국으로 판정함

결론

- 정맥주사용 주사제의 원산지는 유효성분(API)을 생산한 한국임



정맥주사용 주사제

사례명 [정맥주사용 주사제]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7240(2026.01.21.)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HERZUMA®(trastuzumab-pkrb) 주사제
	구성	• 유효성분(API, DS) : trastuzumab-pkrb • 부형제 • 150mg 바이알
	용도	HERCEPTIN(trastuzumab)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며, HER2/neu 수용체 길항제로서 HER2 과발현 유방암, HER2 과발현 전이성 위선암 또는 위식도점막부선암 치료에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유효성분(API 또는 DS)인 trastuzumab-pkrb 제조 2. 포르투갈 제조공정 - 한국산 API를 부형제와 조합하여 제형화 - 150mg 바이알에 충전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만들어 무라벨 의약품(uDP) 생산 3. 폴란드에서 라벨링 및 포장하여 용량형 완제의약품(fDP) 생산 4.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제품의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검토해야 함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포르투갈과 폴란드에서 수행된 공정은 유효성분(API)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유효성분(API)을 제조한 한국을 정맥주사용 주사제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정맥주사용 주사제의 원산지는 유효성분(API)을 제조한 한국임



광섬유 케이블

사 례 명 [광섬유 케이블]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7655(2026.01.23.)

사 실 관 계

제 품	제 품 명	Flat Drop Toneable Optical Fiber Cables(모델번호 : OH-TBFL-INA101BK, OH-TBFL-KRA101BK)
	구 성	광섬유, 버퍼 코팅, 아라미드사 등 보호층, 내부 쉬스 및 팽윤사로 된 수분차단 요소, 강도부재 및 동도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보호 쉬스
	용 도	각종 통신망, 통신설비, 데이터센터 및 건물 네트워크 배선에서 광데이터 신호를 전송
	원 재 료 HTSUS	
	완 제 품 HTSUS	8544.70.0000
제 조 공 정	[상세 공정]	
	[제품1] OH-TBFL-INA101BK 1. 인도에서 광프리폼 제조 및 광섬유 인발 공정 수행 후 한국으로 반입 2. 한국 제조공정 - 압출공정으로 버퍼층 추가하고 그 위에 실 피복 - 한국산 동선 추가 후 전체 케이블을 덮는 두 번째 쉬스 추가 - 완성된 케이블을 릴에 권취 3. 미국으로 수출 [제품2] OH-TBFL-KRA101BK 1. 일본에서 광프리폼 제조 후 한국으로 반입 2. 한국에서 광섬유 인발 공정 및 제품1의 한국 제조공정과 동일한 제조공정 수행 3. 미국으로 수출	

쟁 점 사 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목적의 원산지 판정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적용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 1304』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목적이라고 판시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거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판정 결과)
- 광프리폼은 광섬유 케이블의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굴절률, 코어 및 클래딩 구조, 화학적 조성과 같은 특성이 제조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되고, 광섬유 인발 공정으로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여도 코어와 클래딩의 비율 및 화학적·광학적 특성은 유지되며, 한국에서의 후속 제조공정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지도 않으므로, 광프리폼을 생산한 인도 또는 일본을 광섬유 케이블의 원산지로 판단함

[한-미 FTA에 따른 특혜적용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제8544.70호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 (19U.S.C. § 1202) General Note 33(o)」에 따라 다음의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
- (판정 결과)
- 제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들은 모두 제8544.70호 이외의 다른 소호에 분류 되므로 제8544.7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결 론

- 광섬유 케이블의 원산지는 광프리폼의 생산국에 따라 결정되므로, OH-TBFL-INA101BK의 원산지는 인도이고, OH-TBFL-KRA101BK의 원산지는 일본임
- 그러나,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한국산으로 판정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사례명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무역제재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8313(2026.02.11.)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Base Yukol
	구성	• 프로필렌옥사이드, 에틸렌옥사이드 : 한국산 • 트리에틸포스페이트 : 중국산
	용도	폴리우레탄 폼, 엘라스토머, 수지 중간체, 산업용 화학 제형에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에서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 제조 - 한국산 프로필렌옥사이드, 에틸렌옥사이드 및 기타 투입물을 사용하여 중합 공정 수행 2. 한국에서 트리에틸포스페이트가 혼합된 PPG 제조 - 중국산 트리에틸포스페이트를 한국산 PPG에 혼합하여 추가적인 난연 특성 부여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제재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PPG의 모든 구성요소가 한국산이고 중합 공정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므로 PPG의 원산지는 한국임. 이후 난연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PPG에 중국산 재료를 첨가하더라도 추가 중합이나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혼합된 PPG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판정함

결론

- 무역제재조치 적용 목적상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의 원산지는 한국임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사례명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8367(2026.02.20.)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모델번호 : EC IPC-YYNT04-M2520-POE)
	구성	• PoE(Power over Ethernet) 보드 : 한국산 • 이미지 센서 보드, ISP(image signal processor) 보드 : 중국산 • 렌즈 : 대만산 • IR 필터 어셈블리 : 중국산 • 중국, 대만, 일본, 한국에서 부품 조달
	용도	옥외 모니터링용 네트워크 기반 CCTV 카메라로서, 교통 흐름 및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중국, 대만, 일본, 한국산 부품 조달 2. 한국 제조공정 - PoE 보드와 이미지 센서 보드 및 ISP 보드를 브래킷에 나사 체결하여 부착 - 커넥터 어셈블리 추가 및 전기 신호 검증 수행 - 렌즈와 IR 필터 어셈블리를 보드에 부착 - 모드 모듈과 광학 장치를 브래킷 및 볼트로 연결하고 하우징 추가 - 시험, 펌웨어 업그레이드, 광학 재검증,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중국산 이미지 센서 보드와 ISP 보드는 이미지의 포착·처리·압축 기능을 수행하여 IP 카메라의 주된 기능을 부여하고, 한국에서의 조립공정은 이들 중국산 보드를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므로, IP 카메라의 원산지를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을 생산한 중국으로 판정함

결론

-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원산지는 이미지 센서 보드와 ISP 보드를 생산한 중국임



리튬 인산철 양극 활물질

사례명 [리튬 인산철 양극 활물질]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8366 (2026.02.23.)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리튬인산철 양극활물질(LFP CAM)
	구성	• 주 전구체 (FePO ₄ , CAS No. 10045-86-0) • 리튬 원료 (Li ₂ CO ₃ , CAS No. 554-13-2) • 탄소 원료 (C ₆ H ₁₂ O ₆ , CAS No. 50-99-7) • 분산제 (PEG, CAS No. 25322-68-3)
	용도	미국에서 제조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외국인 전구체 혼합물 (FePO ₄ , Li ₂ CO ₃ , C ₆ H ₁₂ O ₆ , PEG) 한국으로 조달 2. 한국 제조공정 - 열처리 및 탈응집 공정을 통해 새로운 화학물질인 리튬인산철(LFP, LiFePO ₄) 형성 - 전구체 혼합물의 탄소 원료가 LFP 입자 표면에 비정질 탄소층 형성 - 물리적·전기화학적 특성이 변화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용 LFP CAM 완성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전구체 혼합물은 한국에서의 제조 공정을 통해 화학반응이 나타나 새로운 화학물질인 리튬인산철 양극활물질로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을 LFP CAM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리튬인산철 양극활물질의 원산지는 한국임



리튬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용액

사례명 [리튬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용액]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례번호 NY N358415(2026.02.25.)

사실관계

제품	제품명	lithium hexafluorophosphate solution
	구성	• 리튬 플루오라이드 (lithium fluoride) • 오픈플루오린화인 (phosphorus pentafluoride) • 정제 에스터 용매 (purified ester solvent)
	용도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배터리급 액상 전해질 용액
	원재료 HTSUS	
	완제품 HTSUS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한국 및 기타 국가산 원료 조달 2. 한국 제조공정 - 리튬 플루오라이드 합성 - 한국산 및 기타 국가산 원료로 오픈플루오린화인 형성 - 오픈플루오린화인을 A국산 정제 에스터 용매와 반응시킴 - 리튬 플루오라이드 반응기에 투입하고 불순물 제거 - 정제 후 배터리급 규격에 맞도록 용액을 표준화 - 각 생산 로트 품질시험 실시 및 규격 적합성 확인하는 성적서 발급 - 완성품 충전, 밀봉 및 상업적 유통 준비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totality of the evidence) 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리튬 플루오라이드와 에스터 용매의 결합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전해질 용액이라는 유의미하게 새로운 용도를 가진 제품이 형성되며, 이는 어느 하나의 성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한국을 리튬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 용액의 원산지로 판정함

결론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원산지는 한국이므로 제301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DIY 코바늘 신발 키트

사례명 [DIY 코바늘 신발 키트]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

사례번호 NY N358854(2026.02.27.)

사실 관계

제품	제품명	DIY 코바늘 신발 키트
	구성	• PVC 걸창 : 터키산 • EVA 안창, 인쇄된 패턴 시트 : 한국산 • 접힌 종이 스트립 볼/케이크 : 대만산
	용도	소비자가 구매 후 직접 신발의 갑피를 코바늘 뜨개질로 만들고, 제공된 부품을 조립하여 착용 가능한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는 키트
	원재료 HTSUS	• PVC 걸창, EVA 안창 : 제64류 • 인쇄된 패턴 시트 : 제49류 • 접힌 종이 스트립 볼/케이크 : 제48류
	완제품 HTSUS	6406.20.0000
제조 공정	[상세 공정] 1. 터키산, 대만산 부품들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제조한 부품들과 함께 키트 조립 및 소매용으로 포장 3. 미국으로 수출	

쟁점 사항

-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법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현행 무역제재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 해당 공정을 통해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참고 판정 :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참고 판례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참고 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세트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제조 공정상 명확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의 원산지를 해당 제품의 원산지로 결정함

- **(판정 결과)**
- 본 제품은 세트에 분류되고 어느 하나의 제조공정에서도 명확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창과 면사는 상품의 근본적 성격을 규정하는 걸창에 비해 부차적인 요소이므로 걸창의 원산지인 터키가 전체 세트의 원산지임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U.S.C. § 1304』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의 생산품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입법 목적이라고 판시함

참고 판례 : *United States v. Friedlander & Co., 27 C.C.P.A. 297, 302(1940)*

- 『19 C.F.R. § 134.1 (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Treasury Decision (T.D) 91-7, published in Volume 25, Customs Bulletin and Decisions, at6(1991)

-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품명, 특성,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물품은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포장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최종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 대신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판정 결과)**
- 해당 제품은 터키와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국가 모두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매 포장에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함

결론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목적상 DIY 니트 신발 키트의 원산지는 터키임
- 세트에 포함된 각 구성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